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김확열(부경대) · 최수영(부경대) · 김형석(부경대)

I. 서 론

조세회피(Tax Avoidance)란 납세자가 특정 소득에 대해 정부가 의도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행위이다. 조세회피행위는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볼 때, 합법적 행위와 비합법적 행위로 구분 가능한데, 전자를 절세라고 하고, 후자를 탈세라고 한다. 합법적인 절세 행동을 조세회피(tax avoidance)라고 사용하고 있으며, 비합법적인 조세회피를 탈세(tax evasion)라고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김지범 박상연 2013) 조세회피행위는 국가의 차원에서 볼 때,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는 세금을 개별 기업에 잔존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아서 많은 파생적 폐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개별 기업들간에도 조세대응 능력 차이를 가져와서 공평과세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차원에서 볼 때, 재무보고 이익인 세후 순이익의 증가와 세금납부에 따른 현금유출을 억제시켜 보다 많은 현금이 기업내부에 잔존하게 함으로써 기업내부의 현금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기에 기업들이 조세회피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회피와 관련된 최근의 선행연구는, 내부 및 외부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최동춘, 서정록, 2013), 기업소유구조와 조세회피(강정연, 김영철 2012, 이균봉 2010, 오정택, 김영화 2010), 경영자 특성과 조세회피(Dyrenge et al. 2010) 경영자특성 및 지배구조와 조세회피(김지범, 박상연 2013),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 및 기업가치(강정연, 고종권, 2014, 도경분, 김확열 2013)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진태홍, 최현섭, 2012) 기업지배구조와 세무신고 공격성(정용수, 이윤원, 조용언 2010) 외국인지분율과 조세회피(홍영은, 박종국, 이계원 2009), 기업지배구조의 질과 조세회피(최학삼 2008) 조세회피와 경영자 보상(Desai and Dharmapala 2006) 등이 진행되어 왔다.

조세회피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기업의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조세회피 이론은 조세회피 효과에 대한 주주와 경영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전통적 연구들은 조세회피를 기업의 자원을 정부로부터 주주에게 이전하여 기업가치 또는 주주의 부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을 뿐, 경영자들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세회피를 최대한 이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대리인 이론을 바탕으로 조세회피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제시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종권 외 2013)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들은 주인-대리인 관점에서 조세회피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즉,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환경에서는 조세회피를 통한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요인이 필요한데 그것이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감독·감시하는 제도 및 체제로 정의할 수 있으며(오준환, 2009), 기업을 경영하고 통제하는데 필요한 제반 정책과 절차를 의미하며 경영과 관련된 사람 및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한다. (최동춘, 서정록 2013) 이러한 기업지배구조의 체제도 내부와 외부 지배구조로 구분될 수 있다는 Rezaee (2009)의 연구시각에 준하여 지배구조를 보면,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감사인, 보수위원회 등의 내부 지배구조와 외부감사인, 규제·감독(기관), 자본시장참여자 등의 외부 지배구조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각은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에 수용할 만하다.

한편, 회계정보는 기업지배구조 체제가 지향하는 기업가치의 제고에 대한 재무적 평가척도로써 내·외부메커니즘에 의해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 체계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회계정보는 기업지배구조 체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영향도 동시에 받아서 산출된 재무정보이기에 기업지배구조는 이해당사자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회계정보가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해 왔다.

자본시장에서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경영자는 주주의 효용(투자수익)보다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을 갖는 대리인문제가 발생하게 하였다. 기업지배구조를 대리인 이론에서 접근할 때,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사적이익 추구의 행동과 조세회피가 상호보완적이라면, 기업지배구조가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의 조세회피(Tax Avoidance)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기업의 내부 및 외부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연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의 내부지배구조로는 지배주주 및 외국인 지분율과 이사회 의 독립성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설치여부와 조세회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고, 외부지배구조로는 외부감사인의 규모 및 감사보수와 조세회피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구분에 준하여 조세회피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기업지배구조의 여러 요인 중, 어느 것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복합적 시각에서의 기업의 조세회피를 분석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지배구조를 내부와 외부로 분류한 선행연구(박경서, 조명현 2002 ; Gilian 2004 ; Rezaee 2009)의 시각을 수용하여 기업지배구조를 내부지배구조와 외부지배구조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간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이다. 둘째,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감사보수가 조세회피에 미친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연구영역을 조금 더 확장했다는 점이다. 셋째, 기존의 연구는 2단계 회귀분석을 이용하더라도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자료 및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자료를 이용하였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절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III절에서는 연구설계를 하며, IV절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V 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II. 선행연구검토 및 가설설정

2.1. 기업지배구조이론

기업지배구조란 주주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활동을 감독, 감시하는 메커니즘으로 정의하며 기업경영에 관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인 주주, 경영자, 이사회, 종업원, 채권자, 규제당국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을 감시·통제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Rezaee 2009)

오늘날 회계학 연구와 관련된 주류의 기업지배구조 이론은 대리이론이다¹⁾(Fama and Jensen 1983).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감시하고 억제하여 기업경영에 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진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해 줌으로써 대리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2.1.1. 내부지배구조

1) 이사회의 독립성

이사회 내 사외이사제도는 이사회의 역할강화를 통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도입되었으며, 형식상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이 거수기 역할을 해 온 이사회의 감사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이 가지는 기대효과로는 소유경영자의 전횡 견제, 소유경영자와 소액주주의 상충되는 이해관계 조정, 경영의사결정의 승인, 경영성과의 평가, 내부 통제시스템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감독, 감사기능의 효과성에 대한 감시, 재무보고과정의 완전성, 신뢰성 및 품질의 감독 등을 통해 경영의사결정의 과정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에 있다.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외이사제도가 기업의 경영진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순기능을 가진다는 주장과 사외이사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심할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을 가져온다는 주장도 있다.

Fama and Jensen(1983)에 따르면 주주는 경영자를 감시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사회에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며, 사외이사는 노동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의 감시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유인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사회가 지녀야 하는 본연의 독립성을 강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주주의 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높은 사외이사비용은 기업 가치를 증가(Rosenstein and Wyatt 1990)시키고, 사외이사의 보상이 기업성과와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Cordeiro et al. 2000)는 연구들이 있다 사외이사제도가 이익의 질²⁾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 대리이론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서 비롯되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이해상충을 핵심적인 문제로 본다. 정보를 생산, 보유하는 기업내부자가 정보비대칭을 이용하여 기업외부자의 이익을 손상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대리인관계에 있는 경영자는 항상 주주 부의 극대화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태에서 대리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2) Francis et al.(2004)은, 이익의 질을 결정짓는 속성을 발생액의 질 이익지속, 이익지속성, 예측가능

연구들도 살펴보면, Peasnell et al.(2001)은 영국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의 상향조정유인이 있는 경우에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으면 이익조정을 낮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Beasley et al.(2000)는 분석한 기업일수록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이 낮음을 보고하였다. 김병호(2006)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익의 상향조정의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음을 검증하였다. 김문태, 박길영(2009)은 이사회(사외이사)의 비율과 사외이사의 활동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사적비용(접대비 등)을 억제시키고 자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서술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사외이사제도의 순기능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외이사과 기업가치 사이에 유의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으며(Bhagat and Black 2002; 김창수 2006), 이사회가 막강한 최고경영진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다(Byrne and Melcher 1996).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실증결과는 사외이사의 대부분이 대주주 혹은 경영진의 추천에 의해 선임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연구(이한득 외 2001)도 있다.

이사회와 사외이사에 대한 상기의 선행변수들을 종합해 보면, 부정적인 연구결과도 있지만 대체로 사외이사제도가 기업의 경영진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다.

2) 감사위원회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정비하려는 여러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회계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되는 동시에 1999년 상장법인에 대하여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하였고, 2000년도에는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의무화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다. 다만,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기업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수 있다.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의 2/3이상이어야 하며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또 감사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도록 규정되었으며, 감사위원의 추천을 위해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2001년 일어난 엔론(Enron) 관련 회계 스캔들을 계기로,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책임론이 미국에서 대두되면서 감사위원회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새로운 규정들이 제안되었다. 그 결과로 미국은 최근 회계개혁법안(Sarbanes-Oxley Act, SOX)에서 감사위원회에 재무전문가가 있는지의 여부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제들은 감사위원회가 기업지배구조와 재무보고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대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는 기업의 회계부정을 감시하고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여 기업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박수근 2010)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기업의 회계책임을 보증하며, 기업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내부통제구조의 적합성, 감시기능의 품질 등을 감독한다. (정용수 외 2011)

감사위원회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감사위원회에 대한 대부분

성, 이익 평탄성, 가치 관련성, 적시성 및 보수주의 등 7가지로 구분 하였다.

의 선행연구들 중에서도 감사위원회의 특성(;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 등)과 재무보고의 품질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집중되어 있다. 재무보고의 품질을 나타내는 매개변수로 이익조정 수준, 재무제표의 재작성, 회계부정의 발생빈도, 재무보고의 보수성 등을 설정하여 연구해 왔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기업의 이익조정과 사외이사 비율간의 음(-)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Peasnell et al. 2001 ; Klein 2002 ; 이상철, 이경태 2003), 사외이사의 비율, 활동성, 재무경력 유무의 전문성과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이익조정 간의 음(-) 관계를 검증한 연구(Xie et al. 2003) 등이 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경영자의 자의적인 사적비용의 통제 및 자산효율성 제고를 분석한 연구(김문태, 박길영 2009)도 있다.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는 이사회하의 하부 의원회로서,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서정우, 김용민 2002). 그러므로 기업의 이사회나 지분비율 등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의 하나인 감사위원회는 기업 재무보고의 품질이나 내부통제의 수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기에(곽수근 2010) 기업의 조세회피에 견제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있다.

3) 대주주지분율

소유자와 경영자의 이해불일치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한 대리비용의 발생을 극소화하기 위해 주목받게 된 기업지배구조 중의 하나가 소유구조이다. 소유구조를 구성하는 내부주주와 외부주주는 현실적으로 상반되는 유인을 가질 수 있어 대리인 문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소유구조는 조세회피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소유구조의 주체별 유인이 서로 다르므로 조세회피에 대한 영향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배주주 지분율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하다.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지배주주와 외부주주의 이해가 불일치하면 지배주주는 조세회피를 사적편익의 수단으로 이용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에 조세회피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반면 지배주주의 지분이 증가할수록 지배주주와 외부주주의 이해가 일치하는 정도가 높아지면 기업의 투명성이 증가하여 조세회피를 사적편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져 조세회피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강정연, 김영철 2012)

기업의 소유구조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최동춘, 서정록(2013), 김지범, 박상연(2013)의 연구를 보면, 대체로 소유자 기업의 경우, 대주주의 지분율이 경영자의 조세계획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피함으로써 기업 내 현금유보하여 대주주의 부를 극대화 하려는 것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반면, 강정연, 고종권(2014), 이균봉(2010), 최학삼(2008)의 연구결과를 보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오정택, 김영화(2010)의 연구결과를 보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50%미만일 경우에는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50%를 상회하면 건전한 기업경영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려하는 반면 조세회피하려는 성향은 작아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주주지분율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하지만, 대주주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사적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의 이익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배주주 지분율과 조세회피의 관계는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검증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4) 외국인주주 지분율

외국인주주의 지분율증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긍정적 입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 투자자에 비해 정보비대칭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역선택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기업공시가 투명하고 투자자 보호정책이 체계화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정보비대칭에서 파생된 불리함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이다(La Porta et al. 2002).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경영 참여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 억제를 통한 정보비대칭의 완화, 기업가치의 증대와 추가적인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주주의 지분율증가는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Khanna and Palepu 1999)가 존재한다.(이상철 외, 2009) 반면 외국인투자자가 거대주주로서의 권한을 활용하여 고배당을 요구하고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경영활동에 간섭하여 단기이익 극대화과 약탈적 이익 추구 행태를 보이는 등 기업의 지속적인 가치창출활동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가진다고 보는 연구(이균봉 2010)도 있다.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가 줄어드는 음(-)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최동춘, 서정록 2013 ; 강정연, 김영철 2012 ; 오정택, 김영화 2010 ; 박종국, 홍영은 2009)을 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이 기업의 정보비대칭과 투명성의 개선에 영향을 미쳐서 조세회피가 최대주주나 경영자의 사적편익 추구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해석을 보고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조세회피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투명성의 하락과 정보비대칭의 증가에 따른 대리인 비용의 증가가 조세회피로 인한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성향이 높은 양(+)의 관계를 보고하는 연구(이균봉 2010)도 있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조세회피를 통해 확보한 현금을 고배당 요구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기업으로부터 유출시키기에 조세회피에 적극적이라는 해석을 제안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과 조세회피 간의 관련성에 대한 양분된 연구결과가 존재하기에 실증분석을 통해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2.1.2. 외부지배구조

1) 감사인의 규모

2001년 미국의 Enron 사건 이후로는 감사인이 감사서비스와 함께 비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많은 실증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감사인의 감사 및 비 감사업무 수임으로 인한 피 감사기업에 대한 경제의존성은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낮추어, 피 감사기업의 이익의 기회주의적 과대계상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규모가 큰 감사인은 자신의 명성에 맞는 감사품질을 유지 및 제공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고, 또한 감사실패에 따른 소송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 감사기업의 기회주의적 이익 과대계상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가능성이 높아 피 감사기업의 회계수치에 더 보수적일 수도 있다. (백원선과 유재권, 2005)

외부 감사인의 규모와 감사업무의 품질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다양하다. Teoh & Wong(1993)은 Big8 감사인이 감사한 기업의 이익반응계수(ERC)가 더 높다는 결과를, DeFond & Jiambalvo(1993)는 Big8 감사인이 감사인과 피 감사기업과 의견불일치 사실을 더 많이 보고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한편 Becker 등(1998)은 Big6 감사인이 감사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유의적으로 낮다는 결과를, Francis & Krishnan(1999)은 Big6 감사인이 높은 발생액을 포함한 재무제표에 대해 더 많은 비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처럼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하는 대형 회계법인(Big8, Big6, 또는 Big 5)의 감사인이 Non-Big회계법인의 감사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감사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김연용 2013)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들은 Big 감사인과 Non-Big 감사인의 감사품질 차이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국현(2007)은 Big5 감사인과 Non-Big 감사인의 차이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했고, 황인태 강선민 정도진(2009)은 각 감사인마다 차별화된 주력 감사시장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감사환경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최적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감사인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Big4 감사품질의 우월성이 일관되게 증명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나종길과 최관(2010)은 Big5가 감사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Big5 감사인이 보다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최상문과 도경분(2007) 역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Big6와 Non-Big6간의 감사품질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고, 최정호와 이정우(2008)는 Big4 회계법인이 감사한 기업의 이익의 질이 Non-Big4 회계법인이 감사한 기업의 이익의 질보다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김정교 외 2011) 김용연(2013)은 Big4 감사인의 피 감사기업 회계이익은 그렇지 않은 피 감사기업 회계이익에 비해 기업가치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Big감사인과 Non-Big감사인의 감사품질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일관성 있는 결론을 내어놓고 있지 못하며, 분석대상 기간별로도 결과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감사인의 규모(Big감사인)와 조세회피 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확보해야 되리라 본다

2) 감사보수

감사인이 기업으로부터 감사업무 및 비 감사업무를 수입하는 한 독립적일 수 없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Simunic, 1984), 이와 관련하여, 감사보수, 비 감사보수, 또는 총 보수로 측정된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도와 감사인의 독립성의 관계를 살펴본 실증연구 결과들이 (안홍복, 2005 ; 최종학 외, 2005)제시되었다.

감사품질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감사보수를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해 왔다. 감사보수와 감사품질에 대한 연구들에는, Choi et al. (2009)의 과대 또는 과소 지급된 감사보수(abnormal audit fee)와 재량적 발생액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분석결과, 감사보수가 높을수록 감사인과 피 감사인 사이에 경제적 밀착관계가 형성되어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하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오현택(2006)은 피 감사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에 따라 재무

보고의 보수주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감사보수를 많이 지급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인의 재무보고가 덜 보수적이라는 결과를 제시였다. 김진희 외(2009)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등의 감사특성과 감사품질에 대한 관계를 분석했는데, 감사보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비 감사 비중이 높을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저하되어 감사품질이 낮아진다고 제시하였다.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위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품질 관련 의사결정은 피 감사기업의 횡단면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안홍복(2005)의 연구는 피 감사기업의 횡단면적 특징 중 기업지배구조가 감사품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감사보수 중에서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감사보수는 감사인의 적극적인 세무계획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경영자의 추가적인 보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는 적극적인 조세회피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2.2 조세회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고 있다. 첫째는 BTD와 국제청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 둘째는 BTD가 존재한다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을 일치 또는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를 알아본 연구, 셋째는 BTD를 가져오는 요인을 알아본 연구, 넷째는 BTD를 이용하여 이익지속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알아본 연구, 다섯째는 BTD와 주식수익률 또는 가치관련성을 알아본 연구 등이 있다.³⁾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세 번째의 연구부류에 속한다. 즉, BT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관련 선행연구로는 박종일·김경호(2002)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재량적 발생액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으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조세혜택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고종권(2003)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재무보고유인과 세금유인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결과,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간의 차이가 커지고 있어서 세금비용이 클수록 세무보고이익을 낮출 것이라는 추론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전규안(2004)은 내부지분율, 부채비율, 이익발생기업의 경우에는 조세비용 등이 BTD에 영향을 미침을 주장하였다. 박종일·전규안(2008)은 감사품질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사품질이 BTD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BTD를 가져오는 요인을 기업지배구조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기업지배구

3) 최근에는 이외에도 BTD정보를 이용하여 선택적 주체들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계이익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과세소득 역시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은 회계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꺼이 조세를 부담하는가를 알아본 연구, BTD정보와 부의금융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 BTD와 소유집중도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 BTD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조세회피유인을 알아본 연구, BTD 정보와 토빈q 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 BTD와 이익조정기업 간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 BTD 정보를 이용하여 공격적 재무보고기업들이 동시에 공격적 세무보고행위를 수행하는지를 알아본 연구, BTD와 재무보고 정정 보고를 수행한 기업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 BTD정보를 이용하여 종업원 스톡옵션의 가치관련성을 알아본 연구, BTD 정보를 감사인이 보수결정에 반영하는지를 알아본 연구, BTD 관련정보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와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 등이 있다. 위의 대부분 연구들에서는 BTD정보를 재량적 회계보고 혹은 이익의 질에 대한 측정치로 보고 있으며, 과세소득을 선택적 성과측정치로 간주하고 있다(박종일·전규안, 2008).

조는 기업경영 통제 시스템으로서, 소유경영자에 의한 경영기능,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독기능,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기능, 규제기관 또는 기준제정기관 등에 의한 감시기능 그리고 투자자나 채권자 등과 같은 정보이용자에 의한 이용자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참가기관 간의 상호작용으로 간주된다.(최동춘, 서정록 2013) 그러나 경영자는 때때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회계정보를 왜곡하려는 경제적 유인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에 회계분식을 행하여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저하된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은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의 지출을 초래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상기 같은 이론을 근거로 내부지배구조변수로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소유구조인 대주주 및 외국인지분율을 이용하고 외부지배구조변수로, Big4제휴여부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를 이용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요인의 특성이 표본에 따라 조세회피성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기업의 내부지배구조는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1-1 : 이사회의 독립성은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1-2 : 감사위원회의 설치는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1-3 : 대주주지분율은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1-4 : 외국인주주 지분율은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기업의 외부지배구조는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2-1 : 감사인의 보수는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2-2 : Big4 제휴기업은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줄 것이다.

Ⅲ. 표본선정 및 연구설계

1. 표본선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 (1) 12월 31일이 결산일인 기업
- (2) 금융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
- (3) 자본잠식이 없는 기업
- (4) 과세소득이 양(+)인 기업
- (5) 주가 등의 자료수집이 가능한 기업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이다. 조건 (1)은 12월 결산기업만으로 표본을 한정하였다. 이는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은 특정산업에 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조건 (2)는 동일한 조건을 지닌 산업에 속한 표본들을 통한 비교·분석을 위한 것이다. 조건 (3)은 자본잠식 기업의 경우, 재무구조악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무비율 등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조건 (4)는 과세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공격적인 세무보고(조세회피)의 동기가 작용하므로 과세소득이 양인 기업만을 표본에 포함시켰다. 조건 (5)는 연구모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종표본은 총 1,433개로 자료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업지배구조 변수 중 사외이사의 비율과 감사위원회 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수작업으로 수집하였고, 소유구조 변수 및 재무제표자료는 Kis-Value에서 추출하였다.

2. 연구모형 및 변수정의

2.1. 연구모형

선행연구들은 기업지배구조를 내부지배구조와 외부지배구조로 구분하며, Rezaee(2009)는 내부지배구조를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감사인 등을 포함하며, 외부지배구조는 외부감사인, 규제기관, 자본시장참여자 등을 포함을 주장하였다. Gillan(2004)은 내부지배구조를 이사회, 경영자 유인, 소유구조, 기업윤리 등으로 나누었고, 외부지배구조를 법규, 시장(노동, 자본, 생산시장), 자본시장정보(지분율 등), 시장의 재무서비스(외부감사 등), 외부감사(언론매체) 등으로 나누었다. 박경서와 조명현(2003)은 내부지배구조로서 의사결정관리와 내부결정통제 기능의 분리, 주식소유분포, 이사회구성, 감사위원회, 인센티브보상체계를 제시하고 외부지배구조로서 외부감사인, 규제기관, 기준제정기관, 투자자 및 채권자를 포함한 자본시장 참여자, 기타 기업보고서 이용자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를 외부지배구조와 내부지배구조로 나누어서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의 시각을 수용하여 내부, 외부지배구조와 조세회피성향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며, 또한 이러한 지배구조의 특성이 강한 기업에서 조세회피성향에의 차별적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내부지배구조의 대용변수로 이사회(이사의 독립성), 감사위원, 기업소유구조(외국인지분율, 대주주지분율)등의 변수들을 사용하고 외부지배구조변수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Big4 제휴여부를 이용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식 1> 통해 검증한다.

$$TAXA_{it} = \alpha + \beta_1 EXCG_{it} + \beta_2 INCG + \beta_3 CONTR + \epsilon \quad \text{<식 1>}$$

여기서,

$TAXA_{it}$: t년도 i기업의 조세회피성향

=유효세율 ETR : 법인세비용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CG: 기업지배구조

EXCG: 외부지배구조

$AFEE_{i,t}$: t년도 i기업의 감사보수의 자연로그를 위한 값

$BIG4_{i,t}$: t년도 i기업이 Big 4 제후법인이면 1, 아니면 0]

INCG: 내부지배구조

$OUTD_{it}$: 이사회독립성: t년도 i기업의 사외이사비율(사외이사수/등기이사수)

$ACDUM_{it}$: t년도 i기업의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1, 아니면 0

OWN : t년도 i기업의 대주주지분율(특수관계인 포함)

FOR : t년도 i기업의 외국인주주 지분율

CONTR: 통제변수

$SIZE_{it}$: t년도 i기업의 총자산을 자연로그한 값

LEV : t년도 i기업의 부채비율(부채/총자산)

MTB : t년도에 i기업의 지분의 시장가치(보통주 기말시가총액/ 총 자산)

$CF_{i,t}$: t년도 영업현금흐름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 기초 총 자산)

$ROA_{i,t}$: t년도 총자산 순이익률(당기 순이익 / 기초 총자산)

$AGE_{i,t}$: t년도 기업연령(설립연수 기준,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는 제외)

$\Delta ASSET_{i,t}$: 총자산변화율(t기의 총자산 - t-1기의 총자산)/ t-1기의 총자산

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2.2.1. 조세회피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조세회피 측정방법인 유효법인세율(GAAP ETR)을 사용하였다. 유효법인세율(이하 GAAP ETR)은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을 세전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유효법인세율은 일반적으로 연도별로 측정하고, 분모가 음(-)일 경우에는 정의되지 않는다. 유효법인세율은 손익계산서 항목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료의 제약이 없고 평균적인 조세부담수준을 의미한다. 유효법인세율(ETR)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ETR_{i,t} = \frac{\text{법인세비용}_{i,t}}{\text{법인세차감전순이익}_{i,t}}$$

2.2.2. 기업지배구조의 측정

본 모형에서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기업내부지배구조변수는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서 모형식(1)에서 복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내부지배구조의 변수로는 이사회(OUTD), 감사위원회의 설치여부(ACDUM), 대주주지분율(OWN)과 외국인지분율(FOR)을 사용하였다. 먼저 이사회(OUTD)을 나타내는 변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대용치로서 사외이사비율을 사용하였다.(조현우 외 2005) 즉, 기업의 사외이사수를 총 등기이사 수로 나누었으며, 본 자료에서 사용한 사외이사수와 총 등기이사수는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자료이다. 감사위원회 설치여부(ACDUM)는 기업의 투명한 세무보고에 기여하여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여 사용하였다. 감사위원회의 설치여부로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자료이다. 그리고 소유구조변수로 대주주지분율(특수관계자 포함)(OWN)과 외국인지분율(FOR)을 사용한다. 전영순(2003)과 신현한 외(2004)의 주장에 의하면, 외국인주주는 정보의 수집·분석이 다른 정보이용자에 비해 뛰어나기 때문에 이들의 보유지분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은 경영자의 수탁책임을 강조하고 기업경영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지분율(FOR)은 회계투명성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주주지분율(OWN)은 소유집중 정도가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소유지분율이 증가할수록 소유주와 외부투자자간의 정보비대칭 및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익조정이란 수단을 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자본시장에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작아질 것이라는 주장(Morck et al, 2000)이 있기에 대주주지분율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이를 사용한다.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은 Kis-value자료를 이용하였다.

한편, 외부지배구조 변수로는 Big4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진행한 여부(BIG4)와 감사보수(AFEE)를 사용하였다. 규모가 큰 감사인은 잠재적 소송비용이나 자신의 명성에 맞는 감사 품질을 유지 및 제공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피 감사기업의 기회주의적 이익 과대계상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대형 외부회계법인인 BIG4를 사용하였다. BIG4회계법인의 여부는 Kis-value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감사보수의 정도(AFEE)가 클수록 피 감사기업의 재무보고에 덜 보수적이고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감사보수를 변수로 사용하고, 자료는 사업보고서에 공시한 자료이다.

2.2.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기업규모(SIZE), 부채비율(LEV), 지분의 시장가치(MTB), 영업 현금흐름(CFO), 총자산 순이익률(ROA), 기업연령(AGE), 총자산변화율($\Delta ASSET$)을 사용하였다. 기업규모(SIZE)는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을 취하였다. 기업의 규모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기업의 규모와 조세회피의 관계는 양(+) 또는 음(-)의 관련성이 예상된다. 부채비율(LEV)은 당기 총 부채를 총 자산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이자비용의 감세효과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영자는 조세회피에 보다 적극적일 것이다. 따라서 부채비율(LEV)과 조세회피성향간에는 양(+)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지분의 시장가치(MTB)는 보통주의 기말시가총액을 총 자산으로 표준화하여 측정하였는데,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추가하였다. 영업현금흐름(CFO)은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기초 총자산으로 표준화하여 측

정하였다. 영업현금흐름이 높은 기업은 조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 하려는 유인이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흐름(*CFO*)과 조세회피와의 관계는 음(-)의 관계가 예상된다. 총자산 순이익률(*ROA*)은 당기 순이익을 기초 총자산으로 표준화하여 측정하였다. 총자산순이익률이 높을수록 경영자는 조세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기에 총자산순이익률과 조세회피행위 간의 관계는 음(-)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의 상장기간인, 기업연령(*AGE*)는 기업수명주기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총자산변화율은 ($\Delta ASSET$)은 기말 총자산에서 기초 총자산을 빼 값을 기초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IV. 실증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변수 중, 외국인지분율(*FORN*)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변수들이 평균과 중위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변수들의 정규분포에 근접한 분포를 보인다고 간주할 수 있다.

< 표 1 > 변수의 기술적 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TS	.37210	1.319130	0.000	.24363	11.976
OWN	44.9893	15.04786	15.09	42.7700	93.54
FORN	13.3121	14.81613	.01	6.7500	69.62
ACDUM	.253	.4347	0.0	0.000	1.0
OUTD	.30637	.136398	0.000	.27273	.714
BIG4	.741	.4382	0.0	1.000	1.0
AFEE	18.32878	.720067	16.319	18.16837	20.196
SIZE	26.44413	1.422883	23.149	26.19208	30.349
LEV	.41326	.187946	.046	.41643	.772
MTB	.85161	.622067	0.000	.71706	3.071
ROA	.04897	.046699	-.069	.04546	.167
CFO	.04906	.086585	-.143	.04724	.253
AGE	32.392	18.8870	1.0	34.000	111.0
ASSET	.14930	.292071	-.598	.09498	1.987

<변수설명>

변수는 <식 1>의 설명과 동일함

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 표 2 >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의 상관관계 분석

	TS	SIZE	LEV	MTB	ROA	CFO	AGE	ASSET	OWN	FORN	ACDUM	OUTD	BIG4	AFEE
TS	1.000													
SIZE	.227 ***	1.000												
LEV	.198 ***	.107 ***	1.000											
MTB	-.130 ***	.317 ***	-.138 ***	1.000										
ROA	-.130 ***	.276 ***	-.444 ***	.475 ***	1.000									
CFO	-.068 ***	.167 ***	-.162 ***	.345 ***	.467 ***	1.000								
AGE	.162 ***	-.045 **	.044 **	-.112 ***	-.254 ***	-.171 ***	1.000							
ASSET	.696 ***	.132 ***	.222 ***	.034 *	-.059 **	-.139 ***	-.014	1.000						
OWN	-.027	-.081 ***	-.191 ***	-.078 ***	.255 ***	.139 ***	.087 ***	-.184 ***	1.000					
FORN	-.005	.342 ***	-.292 ***	.254 ***	.358 ***	.176 ***	-.107 ***	-.150 ***	.089 ***	1.000				
ACDUM	.202 ***	.650 ***	.153 ***	.292 ***	.193 ***	.079 ***	-.140 ***	.147 ***	-.149 ***	.202 ***	1.000			
OUTD	.228 ***	.573 ***	.070 ***	.335 ***	.245 ***	.187 ***	-.141 ***	.156 ***	-.098 ***	.227 ***	.663 ***	1.000		
BIG4	.093 ***	.343 ***	-.037 *	.224 ***	.168 ***	.189 ***	.108 ***	-.053 **	-.072 ***	.221 ***	.270 ***	.150 ***	1.000	
AFEE	.243 ***	.860 ***	.174 ***	.307 ***	.163 ***	.215 ***	.010	.122 ***	-.112 ***	.259 ***	.636 ***	.593 ***	.305 ***	1.000

3. 회귀분석 결과

<표 3> 가설검증 결과

$$TAXA_{it} = \alpha + \beta_1 EXCG_{it} + \beta_2 INCG + \beta_3 CONTR + \epsilon$$

변수명	예상부호	모형(전체)		모형(내부)		모형(외부)	
		계수	t-값	계수	t-값	계수	t-값
(상수)		-3.867	-5.121	-3.118	-5.630	-6.246	-9.959
SIZE	+/-	.011	.331	.084	3.765	.072	2.184
LEV	+	-.089	-.634	-.080	-.569	-.242	-1.715
MTB	+/-	-.492	-11.617	-.471	-11.042	-.493	-11.505
ROA	-	-3.701	-5.319	-3.874	-5.599	-1.735	-2.519
CFO	-	1.484	4.931	1.841	6.269	1.517	4.917
AGE	?	.010	8.066	.012	9.482	.010	7.907
ASSET	?	3.265	41.430	3.234	40.679	3.174	39.654
OWN	+/-	.010	6.449***	.009	5.816***		
FORN	+/-	.010	5.921***	.011	6.369***		
ACDUM	-	.101	1.327	.178	2.352**		
OUTD	-	1.216	5.349***	1.137	5.062***		
BIG4	+/-	.299	5.441***			.275	4.919***
AFEE	+	.136	2.122**			.231	3.605***
수정된 R제곱		.623		.614		.591	
F값		182.665		208.157		230.739	

<유의확률> ***, **, *는 양측검증 시,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변수설명>은 <식 1>의 하단과 동일함

<표 3>은 가설 1과 2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이다. <표 3>을 바탕으로 실증분석 결과가 나타내는 의미를 추론해 본다.

3.1. 가설 1의 검증

기업의 내부지배구조 요인들이 종속변수인 조세회피 성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보면, 대주주지분율(OWN), 외국인지분율(FORN), 이사회독립성(OUTD)는 조세회피에 1% 유의수준에서 (+)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설치여부(ACDUM)의 내부지배구조는 조세회피에 5% 유의수준에서 (+)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설 1의 모형 설명력은 61.4%이고 모형의 적합도 여부는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대주주지분율(OWN), 외국인지분율(FORN), 이사회독립성(OUTD), 감사위원회 설치여부(ACDUM)는 각각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기업의 내부지배구조 4가지 요인 모두 조세회피에 양(+)의 관련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결국 <가설 1-1>의 이사회독립성(OUTD)의 경우, 사외이사들은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면서 경영활동의 감시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기업의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1-2>의 감사위원회 설치여부(*ACDUM*)의 경우,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유인이 강하다는 연구결과(서정우, 김용민 2002)에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기업경영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기업 경영진에 의해 주도되는 조세회피를 적절히 차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1-3>의 대주주지분율(*OWN*) 경우, 지배주주의 지분이 증가할수록 지배주주와 외부주주의 이해가 일치하는 정도가 높아지면 기업의 투명성이 증가하여 조세회피를 사적편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져 조세회피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는 분석(강정연, 김영철 2012)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설 1-4>의 외국인지분율(*FORN*)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이 기업의 정보비대칭과 투명성의 개선에 영향을 미쳐서 조세회피가 최대주주나 경영자의 사적편익 추구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해석(최동춘, 서정록 2013 ; 강정연, 김영철 2012 ; 오정택, 김영화 2010 ; 박종국, 홍영은 2009)과 동일한 해석을 도출했다.

3.2 가설 2의 검증

기업의 외부지배구조 요인들이 종속변수인 조세회피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보면, 감사인의 규모(*BIG4*)와 감사보수(*AFEE*)는 1% 유의수준에서 (+)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설 2의 모형 설명력은 59.1%이고 모형의 적합도 여부는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가설2-1> *BIG4*제휴법인의 감사인은 Non-Big회계법인의 감사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감사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들을 제시한 연구(김연용 2013)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BIG4*제휴법인은 피 감사기업의 조세회피 전략에 대해 좀 더 보수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가설2-2>의 감사보수(*AFEE*) 경우,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감사보수는 감사인의 적극적인 세무계획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경영자의 추가적인 보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는 적극적인 조세회피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안홍복 2005)에 반대되는 결과를 도출했다. 결국, 높은 감사보수에 대해 더욱 정확하고 보수적인 감사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내부지배구조, 외부지배구조로 나눈 연구시각을 수용하여 각각의 지배구조의 요인들과 조세회피 측정치와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부지배구조는 이사회독립성,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대주주지분율, 외국인 지분율을 대용치로 이용하였으며, 외부지배구조의 대용치로 감사인의 규모와 감사보수를 이용하여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유효법인세율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지배구조인 이사회독립성과 감사위원회의 설치여부 및 지배주주 및 외국인지분율이 조세회피와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여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감사역할에 충실하였다는 것이며, 대주주와 외국인투자자는 조세회피를 통한 사적편익의 추구보다는 건전한 기업경영활동이 지속되도록 관여하여 긍정적인 기업가치를 추구하는 유인이 조금 더 강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외부지배구조인 감사인의 규모(BIG4제휴법인)와 감사보수는 조세회피와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BIG4제휴법인은 자신들의 명성과 사회적 지명도를 유지하고자하는 성향이 있어, 감사품질의 보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적극적인 조세회피에 소극적일 것이고 해석된다. 그리고 외부 감사인이 피 감사기업의 경제적 의존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많은 감사보수에도 불구하고 감사품질을 보수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배구조를 내부지배구조와 외부지배구조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좀 더 포괄적이고 균형있는 시각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조세회피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를 추가하여 조세회피의 연구영역을 넓혔다는 것이다. 감사보수를 외부지배구조의 대용치로 이용하여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검증하여 조세회피 연구의 확장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기존 여타 회계연구들에서 통제변수로 활용되는 BIG4제휴법인의 여부를 개별적 설명변수로 구분하여 BIG4제휴법인이 그 명성에 준하여, 피 감사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관되고 정확한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도 다음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 조세회피 측정에 사용된 변수 대용치에 측정오차가 잔존한다는 것이며 다양한 조세회피 대용치를 적용하지 못한 점이다. 이런 한계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다양한 조세회피 대용치 사용이 필요하다. 둘째, 외부 감사인이 제공한 비 감사서비스 제공여부도 포함하지 못한 점이다. 추후 실증분석에서는 비 감사서비스 제공을 추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조세회피와의 관련성도 좀 더 복합적이고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으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곽수근(2010), 감사위원회에 관한 연구들의 비판적 고찰 및 제언,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4호, 175-217
- 강정연, 고종권(2014)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9권 제 1호, 147-183
- 강정연, 김영철(2012),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세무학연구 제29권 제2호, 37-67
- 고종권, 윤성수, 강정연, 이광숙(2013), 실증세무연구의 개관, 회계학연구 제38권 제2호, 367-446
- 김문태, 박길영(2009),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가 경영자의 사적소비와 자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27권 제2호, 211-235
- 김병호(2006), 우리나라기업에서 이사회구성원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이익의 상향과 하향조정유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31권제1호, 1-32.
- 김연용(2013), 감사인의 특성이 회계정보의 기업가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제18권 제2호, 73-94
- 김정교, 유순미, 김정옥(2011), 감사품질이 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 38권, 43-74
- 김지범, 박상연(2013), 경영자특성과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32권 제4호, 267-287
- 김진희, 정재욱(2006),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23권 제4호, 97-123.
- 김창수(2006), 한국의 사외이사제도 도입과 기업가치, 재무연구 제19권 제2호, 105-153.
- 도경분, 김확열(2013), 기업지배구조, 조세회피, 기업가치, 한국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188-1205
- 박경서, 조명현(2002),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투명성, KERY 정책보고서.
- 백원선, 유재권(2005), 감사인의 유형과 보수주의, 세무와감사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KICPA 회계]
- 서정우, 김용민 (2002), 한국기업의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한국 공인회계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 안홍복(2005), 상장기업 재무비율의 확률적 특성분석: 정규분포 조정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435- 462
- 오정택, 김영화(2010), 기업소유구조와 조세회피, 조세연구 10-2집, 917-220
- 오준환(2009), 기업지배구조, 회계정보 및 기업가치: 한국과 미국 자본시장 비교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4호, 75-115 오현택(2006), 피감사 기업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과 기업지배구조가 보수주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제11권 제2호, 29-54
- 이균봉(2010), 기업소유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34집, 187-216
- 이상철·이경태(2003), 감사위원회 도입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8권 제3호, 143-172
- 이장순(2013),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제18권 제2호, 23-44
- 정용수, 이운원, 조용언(2011), 기업지배구조가 세무신고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24권 제1호, 9-40

- 진태홍, 최현섭(2012),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 *조세연구*, 제12권 제1집, 163-184
- 최관(1999), 감사서비스의 생산과 피감사회사의 특성, *경영학연구* 제2권 제3호, 609-635
- 최국현(2007), 감사인규모 유형별 감사품질에 대한 실증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0권 제4호, 1711-1746
- 최동춘, 서정록(2013),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의 관계, *회계연구* 제18권 제1호, 1-27
- 최상문 도경분(2007), 감사품질과 회계발생액, *국제회계연구* 20권, 1-16.
- 최정호, 이정우(2008), 감사품질과 이익의질 및 기업가치에 관한 실증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48권 109-144
- 최종학(2007),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 및 제언, *경영연구*, 제23권 제 1호, 1-44
- 최학삼(2008), 기업지배구조의 질이 조세회피 행위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제50호, 305-322
- 황인태, 강선민, 정도진(2009), Big4 감사품질의 우수성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 적용되는가?, *경영학연구*, 제38권 제호 1-34
- 홍영은, 박종국, 이계원(2009), 경영자지분율에 따른 기업조세전략의 차별적 특성, *세무학연구* 제 26권 제4호, 125- 147

<국외 문헌>

- Beasley, M., J. Carcello, and D. Hermanson(2000),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Consideration of Industry Traits and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 *Accounting Horizons* 14(December): 441-454
- Bhagat, S. and B. Black(2002), The non-correlation Between Board Independence and Long-term Firm Performance, *Journal of Corporation Law* 27 : 231-274.
- Byrne, J. A. and R. A. Melcher(1996), The Best and Worst Boards : Our New Report Card on Corporate Governance, *Business Week* 25 : 82-98
- Choi, J.H., J.B. Kim, and Y. Zang(2009), The Asymmetric Association between Audit Quality and Fees Paid to Audit Firms : Revisited. Forth coming at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 Desai, M. and D. Dharmapala(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 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1): 45-179
- DeFond, M. L. and J. Jiambalvo.(1993). Factors Related to Auditor-Client Disagreements Over Income-Increasing Accounting Method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9(2), 415-431
- Dyreng, S.D, M. Hanlon, and E. L., Maydew(2010). "he Effects of Executives on Corporate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5(4), 1163-1189.
- Fama, E. F. and M. C. Jensen(1983.)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6: 301-325,

- Francis, J., and J. Krishnan(1999), Accounting Accruals and Auditor Reporting Conservatism,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6(1), 135–165
- Gillan, S. L. (2004). Corporate Governance at the Crossroads, Irwin Professional Pub.
- Klein, A.(2002), Audit Committee, Board of Director Characteristics,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3(August): 357–400
- Khanna, T. and K. Palepu(1999), Emerging Market Business Groups, Foreign Investors, and Corporate Governance, *Working Pap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Peasnell, K. V., Pope, P. F. and S. Young(2001), Board Monitoring and Earnings Management, Working Paper, Lancaster University
- Peasnell, K. V., Pope, P. F. and S. Young (2001). Board Monitoring and Earnings Management, *Working Paper*, Lancaster University.
- Rezaee, Z(2002), "Corporate Governance and Ethics", John Wiley & Sons, Inc,
- Rosenstein, S. and J. Wyatt. (1990) Outside Directors, Board Independence and Shareholder Wealth,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6(2) : 175–191
- Teoh, S. and T. J. Wong.(1993), Perceived Auditor Quality and th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The Accounting Review* 68, 346–367
- Xie, B., W. Davidson III, and P. DaDalt(2003), Earnings manage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 The roles of the board and the audit committee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9, 295–316